

수원지방법원 2019. 4. 25 선고 2018나8481 판결 [매매대금청구]

전 문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

변 론 종결 2019. 3. 28.

판결 선고 2019. 4. 25.

제 1 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8. 7. 12. 선고 2017가소26766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지연손해금부분에 관한 청구를 확장하였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7. 12. 피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2,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7. 8. 1.까지 매매대금 2,000만 원을 전부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7. 8. 1. 이 사건 차량을 원고 명의로 등록하였고, 같은 달 8.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라디오 교체 등수리, 리프트 구조 변경 및 차량정기검사를 약속하였으나 수리는 일부분만 이행되었고,리프트 구조 변경 및 차량정기검사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이 사건 차량이 정지하기도 하였고, 리프트도 작동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대한 위반이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의 송달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라 원고가 지급한 매매대금 및 위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을 구매하면 일정 기간 물건운송에 대한 영업보장 및 차량수리를 제대로 하여 줄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차량을 구매하도록 한 후영업보장이나 차량수리도 제대로 해주지 않는 방법으로 차량대금 상당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도 있다.

나. 이 사건 차량의 하자로 인한 매매계약 해제주장에 관한 판단

1)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일부 사실, 갑 제7호증의 기재, 갑 제1, 5호증의 각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① 피고가 2017. 7. 12.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라디오 교체 등 수리, 리프트 구조 변경 및 차량정기검사를 약속한 사실, ② 피고가 약속한 내용 중 리프트 구조 변경 및 차량정기검사 약속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당해 채무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다2367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수리약정 중 '대쉬보드,NAVI, BLACK BOX, 광고도색, 조수석 문짝 판금 도색'부분을 제외한 부분이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중고품으로 이루어졌다는 주장 및 이 사건 차량이 정지하였다거나, 리프트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증거가 없다.

오히려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일부 사실, 갑 제5호증의 일부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약속한 리프트 구조 변경 및 차량정기검사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차량이 운행불가가 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원고는 2달가량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였고 현재도 운행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리프트도 2017. 8. 말경까지는 작동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리프트 구조 변경 및 차량정기검사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사정은 없으므로, 원고는 이를 이유로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판단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차량대금 상당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강두례, 판사 김정중, 판사 정덕수

자동차목록

1. 자동차등록번호 : C
1. 차종 : 중형 화물
1. 용도 : 자가용
1. 차명 : 마이티
1. 형식 및 모델연도 : HD2.5CP-LHL1
1. 차대번호 : D
1. 원동기형식 : D4AL 끝.